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①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②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 포 수 량	배 포 방 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③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 작성예시】

1.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 산출함
 $300,000\text{원} - (300,000\text{원} \times 60/100) = 120,000\text{원}$ (간단계산 $300,000\text{원} \times 40\%$)
 -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text{원} \times 0.2(\text{소득세율})] + [24,000\text{원} \times 0.1(\text{주민세율})] = 26,400\text{원}$
 -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4]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 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⑤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길동	
2	○○대학교 교수	박○○	
3	○○○○단체 회장	이○○	
4	○○○○단체 총무	강○○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6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8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참고1]

[2019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분		대상	지급액
특별강사	특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의 강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 ~ 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